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영 의원 발의)

| | |
|----------|------|
| 의안 번호 | 3464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김길영 의원(1명)

찬 성 자: 김동욱,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상욱, 이성배,
이효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홍국표, 황유정
의원(21명)

1. 제안이유

- 제10조제1항은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표기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의결은 “의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해당 표현은 명백한 용어 오기로서 해석상 중대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법체계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제10조제1항 중 “출석의원”를 “출석위원”으로 정비함(자구 수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u>출석의원</u>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생 략)</p> | <p>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 ----- ----- <u>출석위원</u> - -----.</p> <p>②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디자인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디자인사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의결은 통상적으로 “위원”을 기준으로 하나 해당 조례에서 위원회 정족수를 규정하면서 “출석의원 과반수”로 표기하고 있어 해석상 중대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10조제1항 중 “출석의원”을 “출석위원”으로 정비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법체계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자구수정 등 조문을 정비한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 | |
|--------|-------|
| 시의회사무처 | 재정분석과 |
| 재정분석과장 | 이 선 희 |
| 추계세제팀장 | 김 중 헌 |
| 추계분석관 | 김 경 명 |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